

# WRC-97, Paper Satellite 규제를 위한 일련의 조치 채택



이홍진

한국통신 제네바사무소

1994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94 ITU 전권위원회에서는 결의18 채택을 통해 위성 네트워크에 대한 ITU의 주파수 조정 및 계획 틀을 재검토토록 BR 국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개최된 WRC-97에서는 이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Paper Satellite규제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채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의 배경과 진행경과, WRC-97에서의 주요 결정 내용을 소개키로 한다.



## Paper Satellite규제 논의의 배경

최근 들어 위성 궤도와 주파수의 사용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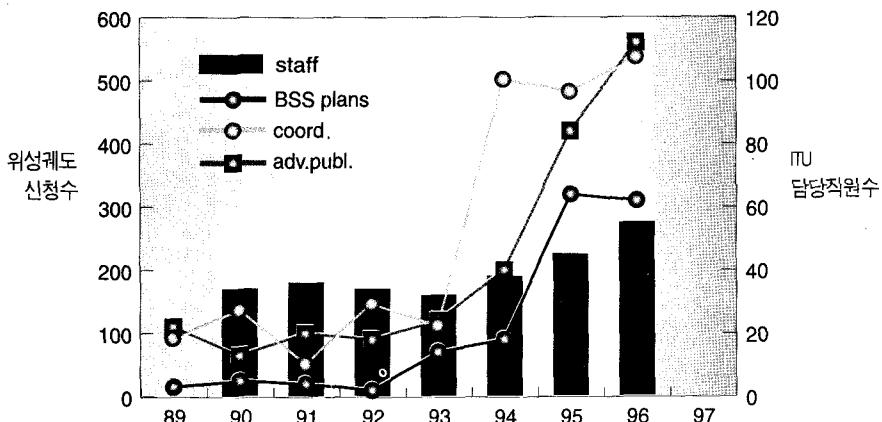
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sup>1)</sup>. 이는 모든 위성통신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그러하며, 고정 통신위성 서비스(FSS), 방송위성 서비스(BSS), 그리고 이동 통신위성서비스(MSS)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한 설정이다.(그림1 참고)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가장 수요가 많은 위성 주파수 대역에 있어서의 위성 네트워크간 조정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주파수 간섭에 대한) 조정(coordination)기간의 장기화와 함께 주파수/궤도자원의 제한에 따른 실제적인 조정곤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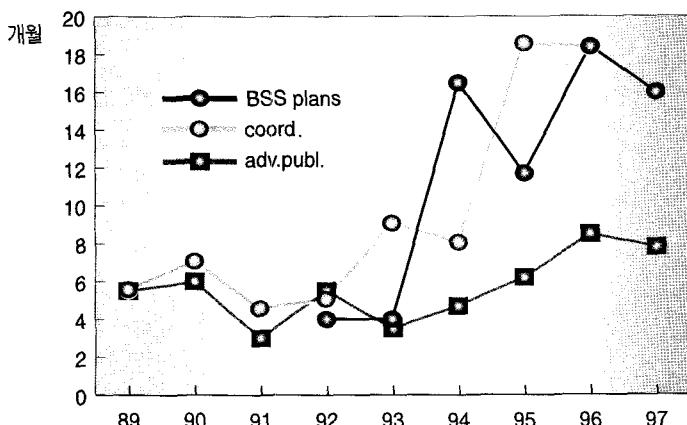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은 위성 주파수/궤도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대함에 따라 갈수록

1) ITU BR측 자료에 의하면, 1996년 말까지 62개국 정부(8개의 국제 위성기구 포함)가 통지(notify)한 약 2,200개의 위성 네트워크가 BR에 의해 처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1) 위성궤도 신청 제출현황 및 ITU 담당직원수



(그림 2) Advance Publication에 있어서의 지연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 실제 요구에 바탕하지 않은 과다신청(overfiling)으로 인한 paper satellite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궤도/주파수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

용과 무선규칙(Radio Regulation)상의 조정(coordination)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발사하거나 궤도를 수정하는 등 무선규칙의 비준수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sup>2)</sup>.

2) Paper Satellite란 실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없음에도 신청되고 조정(coordination)절차를 밟고 있는 등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위성시스템을 말한다. 다수 국가의 정부들이 필요한 것 이상의 보다 많은 위성 궤도나 주파수를 획득하기 위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잠재적 미래 이용을 위해 궤도를 미리 확보해 두고자 하거나 특정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 또는 국제시장에서 장차 상업적 거래 또는 분배를 꾀하는데 원인이 있다. 한편, 이러한 위성 네트워크의 과다신청 또는 실제보다 광범위한 특성을 명기함에 따른 과보호 추세의 증가는 신규 위성궤도/주파수 신청시 조정이 필요한 네트워크의 증가를 가져와 보다 복잡한 조정 협상을 거쳐야만 하는 정부들의 행정적 및 기술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위성네트워크에 대한 ITU의 데이터베이스 신뢰성을 손상시킴으로써 위성궤도/주파수의 실제 포화정도에 대한 신뢰할 만한 평가를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94 교토 전권위원회에서는 결의 18을 통해 위성 네트워크에 대한 ITU의 주파수 조정 및 계획의 틀을 재검토도록 BR국장에게 지시하게 되었다.

## 교토 전권위원회 결의18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94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ITU 전권위원회에서는 결의 18을 통해 무선통신부문(Radiocommunication Bureau; 이하 BR)국장에게 다음 사항을 지시하였다.

### -BR국장에게 지시사항

1. RAG로 부터의 자문 및 무선규칙위원회(RRB)로 부터의 입력을 반영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국제 위성네트워크 조정에 있어 중요 사안에 대한 검토를 차수한다.

#### (검토할 사항)

- i ) ITU 절차와 공지된 주파수 및 위성궤도를 사용하기로 한 공약사이의 연계성
- ii ) ITU의 위성 네트워크에 대한 주파수 조정 및 계획들이 급속히 진보하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 적절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필요성

#### (검토시 목표)

- i ) 무선 주파수대역 및 정지위성궤도(GSO)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위성 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축 및 발전을 보장한다.
- ii ) 국제 조정절차가 자신들의 위성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모든 국가의 요구를 충족하는 한편 다른 무선서비스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 iii) 할당계획이 무선주파수 대역 및 정지위

성궤도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추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할당계획과 관련된 기술진보를 검토한다.

2. 본 검토작업이 무선통신부문(ITU-R)과 특히 무선규칙위원회(RRB) 및 연구그룹에서의 지속적인 작업을 고려하도록 한다.

3. 생략

4. WRC-95에 예비 보고를, WRC-97에 최종 보고를 하도록 한다.

## 관련 연구 진행경과 및 BR 보고서 내용

이에 따라 무선통신자문그룹(RAG)에서는 BR국장의 초기 보고서와 각국 정부로부터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 전권위원회 결의 18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하였으며 (RAG95-2/1, 1995.6.21), WRC-95('95.10월 개최)에서는 BR국장의 보고서를 검토 후 규제/절차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Regulatory and Procedural Matters ; SC)와 무선규칙위원회(RRB), ITU-R 연구반, RAG, BR 등에 본 중요사항의 검토에 있어 입력을 제공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절차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SC)에서는 '95년 RAG의 보고서, ITU-R 연구반으로 부터의 입력, 각국 정부로부터의 기고문 등을 바탕으로 결의18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마련, 제출하였으며 (SC97-2/14(Rev.1), 1997. 2. 11), 무선규칙위원회(RRB)에서도 본 사안을 심층 검토, 보고서를 BR국장에게 제출하였다. (RRB96/22(Rev.1), 1996. 11. 23)<sup>3)</sup>

3) 이밖에도 BR에서는 1996년 중 지역 기구의 협조를 얻어 본 사안에 대한 지역별 정보교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들 각 그룹의 연구 및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WRC-97에 대한 BR국장의 최종 보고서가 마련되었으며, 본 보고서가 담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1) 위성네트워크의 신청에서 실제 사용 시점 까지의 기간 단축

Advance publication과 실제 위성발사, 운용시점 사이의 허용기간(무선규칙1042)을 현재 6년에서 5년으로 1년 단축토록 하며, 연장기간(무선규칙 1550)을 현행 3년에서 1년 단축함으로써 총 기간이 7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연장허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만 한정토록 하며 잘 정립된 절차에 바탕하여 시행되도록 한다<sup>4)</sup>.(권고C)

### 2) 이행의지 제시 (due diligence)요구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위성궤도/주파수를 할당받는 것(overfiling)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한가지는 각국으로 하여금 위성시스템을 구축할 진실한 의도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행의지 제시(due diligence) 요구에는 행정적인 조치와 재정적인 조치가 포함된다.

행정적 이행의지 제시(administrative due diligence) 요구는 주기적으로 위성 네트워크 구축 이행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현재 조정(coordination)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통지(notify)되어 국제 주파수 등록원장(MIFR)에 등록되었으나 아직 사용중이지 않은 위성 모

두에 대해 적용토록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해당 네트워크는 조정 또는 통지절차의 차수에 따라 획득한 권한을 상실하다.(권고A)

한편, 재정적 이행의지 제시(financial due diligence)요구와 관련해서는 신청비용(filing fee), 년간 등록비용(annual registration), 예치금 제도(deposit system)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WRC-97에서는 일차적으로 행정적 이행의지 제시를 채택, 이를 즉시 시행토록 하고 재정적 이행의지는 이후 2년동안 행정적 시행의지 요구를 시행한 결과를 지켜본 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97 이사회에서 채택된 '비용 복구 조치'에 추가하여) 이의 필요성에 대해 WRC-99에서 검토토록 한다.(권고B).

### 3) Advance Publication 단계의 효율화, 단순화

API단계를 현재대로 유지하되 단순화, 보다 효율화하도록 하며, 위성궤도/주파수 확보에 있어 공식 시발점으로서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토록 한다. 또한, API와 공식 조정(coordination) 단계사이의 6개월 기간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에 더하여 API는 조정(Coordination) 정보 제출이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되어야 한다. API와 조정단계를 하나의 단일 절차로 통합하는데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권고D)

### 4) 기타 사항

이밖에도 BR국장 보고서는 위성의 운용 수명문제에 대한 검토문제(권고E)<sup>5)</sup>, 위성에 대한 모니터링(권고F)<sup>6)</sup>, 위성궤도의 공평한 접근 혜

- 
- 4) 현행 무선규칙에 따르면 기간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권고는 총 허용기간 단축과 허용조건의 제한을 통해 paper satellite의 방지와 보다 현실적인 시스템을 제안토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 5) 현재 궤도가 할당된 위성의 운행수명이 실제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긴 것에 대해 주목, 차기 WRC에서 Orb-88의 결의2와 4의 적용을 통해 얻어진 경험에 비추어 재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 6) ITU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내용중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식별, 자료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ITU에서



용(권고G)<sup>7)</sup>, FSS 주파수대역의 DTH(Direct-to-Home) 이용 (권고H)<sup>8)</sup>, 궤도/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권고I), 새로운 조정방법/개념(권고I,J,K,L)<sup>9)</sup>, 위성사업에 있어 각 주체들의 역할(권고M,N)<sup>10)</sup>, 분쟁해결(권고O)<sup>11)</sup>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권고로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조정을 거치지 않은 궤도/주파수 자원의 사용<sup>12)</sup>과 궤도/주파수 자원의 타국정부로의 이양<sup>13)</sup> 등의 문제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 나. 권고의 작용범위

권고의 작용범위와 관련해서는 다음 두가지의 서로 대립되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sup>14)</sup>.

- BSS(Broadcasting Satellite Service), FSS(Fixed Satellite Service), MSS(Mobile Satellite Service) 주파수 대역이 모두 현단계에서 포화

되어 있거나 미래에 포화될 것이므로 이들 조치는 BSS, FSS, MSS 모두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 이들 조치는 조정(coordination) 및 포화문제가 지금 발생해 있거나 BR에 제출된 많은 양의 advance publication이나 조정(coordination) 요청 문서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포화가 예상되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규제/절차에 관한 특별위원회(SC)에서 명시한 주파수 대역은 다음과 같다.

3,400~4,800 MHz, 5,850~7,075MHz,  
10.7~11.7GHz, 11.7~12.2GHz(region2);  
12.2~12.7GHz (region3) ; 12.5~12.75GHz  
(region1), 13.75~14.0GHz, 14.0~14.8GHz,  
17.7~20.2GHz, 27.5~30.0GHz

---

국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토록 하며, 각국은 이의 사용과 부정확한 정보의 식별에 있어 ITU를 지원토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7) 위성궤도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수단인 사전계획(priori planning)이 실제 효과적, 실질적이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계획을 위한 Conference에서 새로운 진보된 기술, 보다 유연한 계획, 다양한 위성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시장변화와 국가그룹에 의한 사용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을 언급하고 있다.
- 8) BSS와 FSS가 종종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움을 이용, FSS주파수에서의 DTH가 무선규칙 2674와 결의 507에 명시된 규제 조항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9) 궤도/스펙트럼 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delta T/T threshold value에 추가하여 coordination arc에 바탕한 새로운 개념 도입, 위성 네트워크 전체 수명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조정(coordination)의 도입, ITU데이터베이스 내용 및 양식에 대한 재검토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10) 각국 정부는 시스템간 조정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유지하되, 조정과정에서 시스템 운영자의 역할을 보다 향상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1) ITU에 위성 조정(coordination)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을 부여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2) 조정을 거치지 않은 궤도/주파수 자원의 이용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무선규칙에 이에 대한 조항이 있는 점과 추가 조치를 위한 제안을 고려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점, 그리고 문제의 일부 축면은 국가간 운영상 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13) 판매/임대 또는 기타 영리 목적으로 궤도와 스펙트럼 자원에 관련된 권리 및 책임을 이양하는 행위가 문제시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상업적 유연성을 제한함이 없이 납득의 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문제의 명확한 범위에 대한 주의깊은 정의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제안이 도출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 14) 교토 전권위원회 결의18의 채택시 배경은 정지위성궤도(GSO) FSS주파수 대역의 포화가 주된 원인이 되었으나 결의 자체는 전반적인 위성 네트워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모든 권고들이 모든 주파수 대역과 서비스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상기사항에 대해서는 WRC-97에서 검토 및 결정이 기대된다.

## 다. 권고의 이행

본 보고서에 담긴 권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는 규제 관련 절차를 가능한 신속히 개선한다는 목표하에 이행에 요구되는 전환기간을 고려하여 WRC-97에서 채택되어야 한다.(권고P).

결의18의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한편 이미 조정(coordination)단계 또는 통지(notification)단계에 있는 많은 수의 잠정적 “Paper Satellite”을 고려하여 이를 네트워크들 또한 이행의지 제시(due diligence)요구가 부과되어야 한다. 새로운 절차의 시행일자는 이미 절차의 각기 다른 단계에 있는 네트워크 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권고Q)



## WRC-97 결정사항

### 1) 위성네트워크의 신청에서 실제 사용 시점 까지의 기간(time frame)

위성 궤도의 신청에 실제 위성의 발사, 운용 시점까지의 기간과 관련해서는 위 권고C의 내용대로 기본 6년을 5년으로, 연장 3년을 2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였다. 한편, 연장 1년을 자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할 지에 대해서는 국가간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후자를택하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연장허용의 조건은 조정(coordination) 단계에 있는 네트워크로서(해당 경우에 한함) 이행의지 제시(due diligence) 요구절차를 충족했어야 하며, 다음의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해당국 정부에 의해 요구되고 확인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발사실패, 해당국 정부나 사업자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사정으로 인한 발사 지연, 조정(coordination)과정에서의 합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위성설계 변경으로 인한 지연, 설계 규격 충족에 있어서의 문제점, 조정과정에서 합의의 어려움, 해당국 정부나 사업자의 통제 범위밖에 있는 재정 환경, 불가항력적 상황.

한편, 실행일자와 관련해서는 WRC-97의 회의 종료 하루 전인 '97년 11월 21일 이후 접수된 Advance Publication에 대해서는 새로운 절차를 적용하며, 이날 이전에 접수된 API제출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본 6년에 자동연장 3년을 그대로 적용키로 결정하였다<sup>15)</sup>.

### 2) 이행의지 제시(due diligence) 요구

행정적 이행의지 제시(administrative due diligence) 요구가 채택된 반면, 재정적 이행의지 제시(financial due diligence) 요구는 유럽국가들이 중심이 된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금번 WRC에서 채택되지 않았다<sup>16)</sup>. 행정적 이행의지 제시는 해당 국가가 적정 시점에서 A. 위성네트워크의 식별, B. 위성체 제조업자, C. 발사서비스

15) '97년 11월 21일 이전에 제출된 API에 대해 기존의 절차를 적용하는데 대해서는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가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체코, 네델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등이 본 결정에 대해 자국의 입장은 유보하였다.

16) 행정적 이행의지 제시(due diligence) 요구에 대한 최종 합의결과가 BR국장보고서 권고B의 취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WRC-97 이전까지 시행에 대한 아무런 결과가 없을 전망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 검토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유럽국가들은 행정적 이행의지 제시 요구를 보완할 재정적 이행의지 제시 요구를 채택할 것을 보다 강력히 주장하였

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각각에 포함되는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A. 위성네트워크의 식별: 위성네트워크 고유 명칭, 해당국 정부명, 국가심볼, 관련 API[또는 무선규칙 Appendix 30/30A에 수록된 위성계획(Plan) 조정요구]에 대한 명시, 조정요구(request for coordination)에 대한 명시[Appendix 30/30A의 경우 비해당], 사용 주파수 대역, 운용체 명칭, 위성 명칭, 궤도 특성.

B. 위성체 제조업자: 위성체 제조업자 명칭, 계약 발효일자, 인도일자, 구매 위성체 수(위성체 구매계약에 1개 이상의 위성체가 포함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제출)

C. 발사서비스 제공자: 발사체 제고자 명칭, 계약 발효일자, 예상 발사 또는 인도 일자, 발사체 명칭, 발사시설 명칭 및 소재지

행정적 이행의지 제시(due diligence) 요구와 관련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관련 정보의 제출시점과 이의 적용범위, 그리고 이미 BR에 공식 신청(또는 궤도/주파수의 변경이 요구)된 위성 네트워크에 대한 절차 적용문제 등으로 이에 대한 WRC-97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 정보의 제출시점과 관련해서는 API단계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해야 한

다. 그러나 회의 종반에 들어 Plenary회의에서 재정적 이행의지 제시(due diligence) 요구 도입 필요성에 관한 유럽국가들의 공동 기고서 제안에 대해 발표자체에 대해 제동을 거는 의사발언이 계속되고 결국 발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투표를 벌이는 긴박한 대립상황이 연출되었으며, 투표 결과에 따라 기고서는 발표되었으나 재정적 이행의지 제시 요구는 결국 다른 수국가들의 반대에 부딪쳐 금번 WRC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한편, 유럽국가들은 동일 사안을 '98년 ITU 전권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하였다.

17) 행정적 이행의지 제시(due diligence) 요구는 장시간에 걸친 논란 끝에 무선규칙 S9[articles 11, S9.7, S9.8, S9.9, S9.11, S9.12, S9.13등]에 따라 조정(coordination)이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받은 FSS, MSS, BSS 위성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과 Appendix 30, 30A의 방송위성계획에 대한 수정이 적용되며, Appendix 30B와 관련해서는 이에 명시된 추가사용(Additional Use)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Appendix 30, 30A의 4.1a)에 따른 수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서비스 지역에 추가하여 서비스 지역을 다른 나라들로 확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게 된다.

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time limit 만료 이전까지 (가능한 조기에) 제출하면 되도록 최종 결정되었다.

이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일부 국가로부터의 FSS시스템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미국정부로부터 정부이용 목적외 비상업용 위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절대 다수의 국가가 이에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FSS, MSS, BSS 모두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sup>17)</sup>.

한편, 행정적 이행의지 제시요구의 적용시점과 관련해서는 1998년 11월 22일부터 적용하되 이미 BR에 공식 신청(또는 궤도/주파수의 변경이 요구)된 위성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이미 MIFR에 수록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21일까지, 그리고 기타 공식 신청(또는 궤도/주파수의 변경이 요구)된 시스템으로 아직 MIFR에 수록되지 않은 시스템의 경우에는 2003년 11월 21일 이전 또는 기존의 절차에 따른 위성시스템의 최종 발사, 운용 기한(연장기간 포함) 이전 중 먼저 해당하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토록 결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행정적 이행의지 제시 정보가 기한내에 BR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네트워크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고 MIFR에도

기록되지 않게 하며, 이미 MIFR에 잡정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기록이 삭제되게 된다. 행정적 이행의지 제시 요구에 대한 WRC-97의 결정은 결의로 정리되었다.

### 3) Advance Publication 단계의 효율화, 단순화

이와 관련해서는 BR국장 보고서에서 권고되었듯이 (권고 D) 조정(coordination)을 거쳐야 하는 위성시스템에 대해 API단계를 현재대로 유지하되 단순화, 효율화 함으로써 제출되어야 할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해당국 정부, 위성체 이름, 궤도 특성, 주파수 범위, 서비스 지역, 서비스 유형(지구국 등급/서비스 종류), 사용개시 일자.

한편, 조정(coordination)이 요구되지 않는 위성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성궤도/주파수 확보에 있어 공식시발점으로서의 API의 성격과 API와 공식 조정(coordination) 단계 사이의 6개월 기간도 유지키

로 결정하였으나 API 이후 조정(coordination)정보제출이 제공되어야 하는 기한에 대해 API 정보 제출시점으로부터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여러 주장에 대해 논의한 후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최종적으로 24개월을 채택하였다.

### 4) 기타사항

WRC-97에서는 국장 보고서상의 권고 E,G,H,I,J,K,L,M,N,O,P,Q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에 대해 주목했다는(noted)는 이상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권고 O(ITU에 위성 조정(coordinaion)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해결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개입시 현실적으로 복잡한 조정문제가 야기됨을 들어 다수국이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위성에 관한 모니터링(권고F)에 대해서는 “궤도 및 관련 주파수 차원의 사용에 있어 명백한 포화상태를 감소시키는데 있어 국제 모니터링의 역할”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